

영등포구의회
제 193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3. 4.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124호로 2016년 2월 1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이 마련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나.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안 제3조)
- 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체
(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제12조(긴급복지심의위원회),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5. 12. 24 ~ 2016. 1. 13)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2015. 7. 1 시행)의 개정으로 빈곤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지원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부터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 신속히 지원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임.
- 조례안은 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긴급지원의 위기상황을 인정하는 사유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 안내와 우리 구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제1호에서 제12호까지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안 제4조에서는 긴급지원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토록 함.
- 최근 빈곤 위기가정의 계속된 자살 사건 발생으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신청과 선별을 통한 기존의 복지에서 벗어나 복지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구민의 긴급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을 확대하여 긴급지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찾아가는 복지를 통하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등 긴급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에 문제점은 없음.

관 련 법 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8., 2012.10.22., 2014.12.30.>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전문개정 2009.5.28.]

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6.2.]